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090
----------	------

2019년 12월 16일
행정자치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한기영의원(찬성자 10명)
- 나. 제 안 일 : 2019년 10월 16일
- 다. 회 부 일 : 2019년 10월 22일
- 라. 상 정 일 :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
2019년 11월 25일 상정·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한기영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이 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난임 직원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난임 진단으로 '난임 시술'을 받은 직원 및 그 배우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제14호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- 다. 입법예고 (2019. 10. 25. ~ 11. 5) 결과 : 의견 없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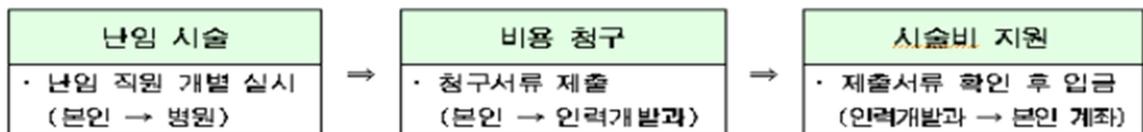
(수석전문위원 한태식)

-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난임¹⁾ 진단에 의한 시술비를 지원하여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 규정(안 제7조제14호)을 신설하려는 것임.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단, 제9호의 경우는 시청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13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14.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</u></p>

추진계획

- 대상 : 서울시 소속 공무원 중 난임 직원 (* 본인 치료에 한함)
- 기간 : '20. 1월 ~ 12월 (* 당해연도 시술에 한하여 지원)
- 내용 : 난임 시술비(본인 부담금 일부) 지원, 연 300만원 한도
- 방법 : 시술비 청구서류 제출에 의한 지원금 지급
 - 청구서류 : 시술비 청구서, 난임진단서, 영수증, 본인 계좌사본 등
- 절차



1)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.

-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이 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로 야기될 개연성이 있고, 이로 인한 업무 등에의 영향을 감안하여 난임직원에 대한 조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부합할 것으로 사료됨.
- 행정국에서는 서울시 난임직원에 대한 추정수를 서울시 난임인구 비율을 적용하고, 제도 시행에 따른 실제 난임직원 증가를 감안한 수요조사와 시술비 지원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노력과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[서울시 난임 직원 추정수](서울시 난임인구 비율 1.36% 적용 추정)

난임직원 추계	연령대별 가임여성 직원수			
	계	20대	30대	40대
28명	2,045	33	810	1,202

※ 가임여성 수는 우리시 직원(사업소 포함) 중 인사 전산상 기혼여성(만20~49세)으로 추출

- 그러나 난임은 여성요인(40%), 남성요인(40%), 부부문제(20%)로 발생하므로 난임직원 및 배우자 대상 난임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난임 치료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.
- 한편, 난임치료와 관련하여 국가와 서울시 차원에서 시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바, 치료비 중복 지급에 따른 이중 수혜 여지는 없는지 여부와 난임 시술비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.

○ 난임 관련 지원 현황

- 국가지원 : 건강보험적용(공단 70% 부담), 국가 난임시술비 지원(50만원 이하)
- 시 지원 : 한의약 난임 치료지원(여성 178만원, 남성 92만원)

참고 : 난임 시술 종류별 1건당 비용 지원 현황

시술 종류		총 비용	건강보험 적용		국가 난임시술비 지원 (중위소득 180% 이하)	
			공단부담 (70%)	본인부담 (30%)	국가지원금	본인부담금
체외수정	신선배아	359	229	130	47	83
	동결배아	130	66	64	40	24
인공수정		70	45	25	20	5

▶ 건강보험적용 기준 : 나이제한x, 시술(신선배아 7회, 동결배아 5회, 인공수정 5회)

○ 또한, 공무원의 복지증진제도는 시민의 세금으로 활용되는 만큼 그 책임성과 책무성이 요구된다는 점, 국가 및 자치구와의 복리후생 수준의 형평성, 복지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
6. 토론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재석위원 10명, 전원찬성).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한기영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	1090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한기영 의원 (1명)

찬 성 자 : 강동길, 김상진, 김인호, 김태호,
김호평, 문병훈, 오중석, 이경선,
이동현, 이현찬, 추승우 의원 (11명)

1. 제안이유

- 난임 진단으로 '난임 시술'을 받은 직원 및 그 배우자를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해결과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.
-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이 직원의 정신건강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난임 직원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.

2. 주요골자

- 서울시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 제14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.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제14호 신설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를 지원함으로써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≙ 900,00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80,000천원임

- 추계의 전제

- 서울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자료 「난임 직원 시술비 지원계획」을 준용하여 만20~49세의 기혼 남녀직원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추계 (남자 직원과 그 배우자의 연령대가 같다고 전제)
- 지원 대상자의 수는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 것을 전제
-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≙ 900,000천원 (연간 180,0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계
			(2020)	(2021)	(2022)	(2023)	(2024)	
세입	-		-	-	-	-	-	-
	소계(a)		-	-	-	-	-	-
세출	제7조 제14호 (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시술비)	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	소계(b)	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□ 총 비용(b-a)		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180,000	900,000

-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 지원비
 - 연간 시술 지원비 ≒ 180,000천원
 - 180,000천원 = 인원 ×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 시술비 평균비용
= 60명 × 3,000천원

※ 자료 : 서울시 행정국 인력개발과 「난임 직원 시술비 지원계획」의 난임 인구 추정 방식 및 난임 시술비 준용(2020년부터 지원 계획)

【참고1】 서울시 난임 인구 비율

(단위 : 명, %)

가임 여성 (A)	난임 여성 (B)	난임 인구 비율 (B/A*100)
2,474,970	33,746	1.36

주: 서울시 가임 여성인구는 만15~49세의 여성을 기준으로 함(2017년 기준)
자료: 서울시 행정국 인력개발과

【참고2】 우리 시 난임 직원 추정 수

(단위 : 명)

구 분	난임직원(배우자) (A*1.36%)	계 (A)	20대	30대	40대
여 자	28	2,045	33	810	1,202
남 자	32	2,368	10	584	1,774
합 계	60	4,413	43	1,394	2,976

주1: 지원 대상자 수는 우리시 직원(사업소 포함) 중 인사 전산 상 기혼 남녀 직원(만20세~49세)으로 추출

2: 서울시 난임 인구 비율 1.36% 적용하여 추정

자료: 서울시 행정국 인력개발과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☎ 02-2180-7954

e-mail : thdud36@seoul.go.kr